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경 상 남 도

목 차

01 도민안전(10)

01. 경남형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본격 운영	3
02. 일시대피자용 재난안전꾸러미 지원 사업	4
03. 찾아가는 안전관리 컨설팅	5
04.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통역앱 지원	6
05. 재해예방 우수마을 인증사업	7
06. 특별사법경찰 생활밀착형 기획수사 전격 추진	8
07.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소방안전 강화	9
08.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10
09. 화재 취약시설 안전용품 지원 사업	11
10. 다문화 가족 119안전체험의 날 운영	12

02 기업·창업·청년(9)

01. 경남 동행론(긴급 생계대출) 출시	15
02.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16
03.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지원사업	17
04. 가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18
05. G-콘텐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19
06. 경남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20
07.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새단장	21
08.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연중 지원	22
09.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23

03 사회복지 · 보건(15)

01.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27
02. 자활성공 지원금 지급	28
03. 위기 도민 신속 지원을 위한 「희망지원금」 지원	29
04.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30
05.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확대	31
06.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전 시군 확대	32
07. 경로당 무료급식 연계 ‘행복식탁 지원사업’	33
08. 장애인 연금 인상	34
09.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기준 확대	35
10. 말기암 환자 가정방문 돌봄사업	36
11. 희귀질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37
12.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38
13.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39
14.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	40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시행	41

04 여성 · 가족 · 보육(10)

01.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확대	45
02. 경력보유여성 면접 정장 대여 지원	46
03.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유형 및 지원 확대	47
0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8
0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49

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50
07.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51
08.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52
09.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53
10. 3~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54

05 생활 · 주거 · 교통(8)

01. 경제 및 민생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 확대	57
02.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58
03.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59
04.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60
05.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61
06.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	62
07.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경남패스	63
08.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AI 배차 시스템 도입	65

06 농림 · 축산 · 수산(16)

01.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69
02.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70
03.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개 사육농장)	71
04. 맹견 사육허가제 제도기간 운영	72
05.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73
06.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	74

07.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지침 개정	75
08.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76
09. 2025년 수산양식분야 신규 공모사업 시행	77
10. 수산정책보험(어선원, 어업인) 지원대상 확대	78
11.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 확대	79
12. 귀어 사랑방 운영	80
13.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지원	81
14. 어촌 도화지 마을 조성 사업	82
15.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	83
16.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개정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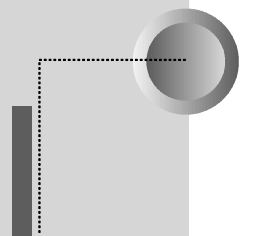
07 문화 · 체육 · 환경(7)

01.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87
02. 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 지원	88
0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89
04. 조례 대상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90
05.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추진	91
06.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본격 시행	92
07.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제도 시행	94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도민안전



경남형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본격 운영

경상남도 | 자연재난과(☎055-211-2824)

민관협력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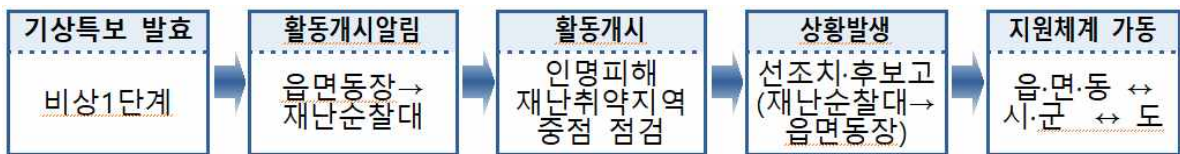
- 마을 지형과 수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민간조력자를 활용하여 재난 발생 우려 시 재난 예찰 및 주민대피 적극 활동

추진상황

-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조직 구성
 - 18개 시·군, 300개 읍·면·동, 순찰대 3,235개, 11,229명
- 기상특보(집중호우, 태풍)시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운영
 - 시범운영 : '24. 8. ~

세부내용

- (구 성) 시·군 마을별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조직 : 마을별 최소 3~4인
- (운 영)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특보 발표(비상1단계) 시 활동



- 기상특보 발효 시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활동 개시 알림
 - : 읍·면·동장 →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유선 통보 및 문자 발송
 - ※ 마을별 인명피해 재난취약지역 및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점점검
-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활동 개시(유선보고)
-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취약시설 보완 및 취약계층 대피요청 등에 따른 지원체계 가동

시행일

2025년 1월 ~

참고 |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조(도민의 권리) 및 제5조(도민의 책무)

일시대피자용 재난안전꾸러미(경남형 임시구호세트) 지원 사업

경상남도 | 자연재난과(☎055-211-2815)

재난 발생 시 일시대피자를 위한 재난안전꾸러미를 제작·배포하여
사전대피 유도하고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배경

- 일시대피자와 이재민에 대한 구분 없이 응급·취사구호세트만 구비되어 있어 일시대피자에 대한 지원 애로
- 응급구호세트는 공산품 위주로 구성(식음료 미포함)
 - 대피자가 별도로 간단한 식음료를 구매하는 등 대피주민 불편 최소화 필요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지급대상) 일시대피자(1박 이내 대피자) * 2박 이상 대피시 응급구호세트 지급
- (구 성 품) 세면도구, 식료품 등 재난안전꾸러미 구성
구성품(안) : 생수(500mℓ), 즉석밥, 컵라면, 치약칫솔, 화장지, 수건, 담요, 에어베개, 등
- (제공방법) 시·군과 지역마트 간 사전 협약 체결을 통해 시·군 요청 시 필요한 물자를 신속히 조달

* (도) 재난안전꾸러미 포장용 에코백 제작·배부 / (시·군) 재난안전꾸러미 제작·배부



시행일

2025년 1월~

참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찾아가는 안전관리 컨설팅

경상남도 | 사회재난과(☎055-211-2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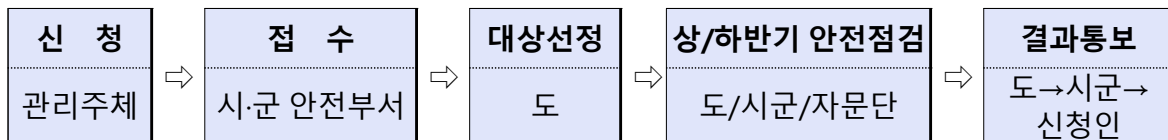
일상생활 공간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노후 주거시설, 편의시설, 여가시설 등 일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손쉽게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불안감 증가
- 안전점검의 중요성 등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선제적 예방조치 미흡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추진기간) 2025. 3. ~ 12.
- (추진대상) 일상 속 노후 건축물(시설물)로 안전점검 필요시설
※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대상은 제외
- (신청자격) 도내 소재 건축물(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주요내용) 안전점검, 안전관리 컨설팅·교육 등
- (추진방법)



- (신청방법) 시군 안전부서에 신청서 제출(별도 제공)

시행일

2025년 3월

참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통역앱 지원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055-211-2763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TBM* 시 통역앱 활용을 통한 언어 장벽 해소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통역앱 이용료 지원

* Tool Box Meeting : 현장작업 전 감독자와 작업자들의 안전 회의

추진배경

- '23년 사고사망자(812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637명으로 78.4%,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10.5% 차지
- 외국인의 국내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언어 문제로(43.4% '22년 통계청 조사) 사회적 갈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언어장벽 문제 우선 해결 필요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지원대상) 도내 조선업, 건설업 등 중소기업 5~10개사 정도
※ 개사당 최대 4백만원(도비 80%, 기업 자부담 20%)
- (지원내용) 민간에서 개발·활용 중인 건설·조선 현장 용어 번역 앱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하도록 비용 지원
 - 모바일 앱의 AI서비스를 활용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대화를 실시간 통역 서비스 제공
※ 대상언어(55개)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태국어 등
- 시행주체 : (재)경남테크노파크 ※ 추후 세부 지원범위 등 사업공고 예정

시행일

2025년 1월(예정)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재해예방 우수마을 인증사업

경상남도 | 안전정책과(☎055-211-2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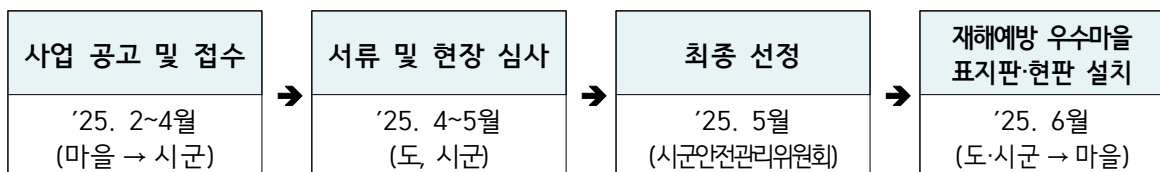
재해예방 활동이 우수하고, 안전개선 의지가 높은 시군별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안전마을 표지판(마을입구), 현판(마을회관) 설치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도 및 시군 등 행정기관 중심의 재난안전관리·대응의 한계
- 마을주민들이 재난예방의 주체로 활동하는 사회적 환경 마련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사업기간) 2025. 2. ~ 6. ※매년 상반기 시행
- (사업대상) 전 시군별 1개 마을
- (사업내용) 안전마을 표지판(마을입구) 설치, 현판(마을회관) 부착
- (추진절차)



- (신청방법) 읍면동(마을담당 직원+이통장)에서 시군에 신청서 제출
- (신청자료) 사업신청서, 안전활동 마을구성원 명부, 재해예방 활동 내역(예찰 일지, 활동사진, 동영상 등), 안전개선 활동사항(안전신문고 신고내역, 각종 건의내역 등), 그 밖에 안전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시행일

2025년 상반기

참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특별사법경찰 생활밀착형 기획수사 전격 추진

| 경상남도 | 사회재난과(☎055-211-2883)

민생범죄가 고질화·다양화·지능화 되는 양상에 따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민생범죄 등 복잡·다양하게 증가하는 행정법규 위반범죄 효율 대응
-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범죄 집중 수사 전개

주요내용

- (기획수사) 언론, 동향, 풍문, 탐문 등을 통한 생활밀착 분야 집중
 - (환경) 도심속 환경오염 행위 (식품) 부정 위해식품
 - (안전) 불법 캠핑장 및 자동차 정비업 (청소년) 청소년 유해 환경
 - (동물) 동물 학대 행위 (의약) 불법 의약품 유통
- (과학수사) 생활중심지 수시 드론 항공 촬영 실시
- (사전예고) 사전 언론보도를 통한 자진 조치 유도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소방안전 강화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
경상남도	예방안전과(☎055-211-5415)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 전	신 규
없음 →	▶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로 편입 ▶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방법 신설

※ 2024.12.1. 이후 건축허가(신축·증축·용도변경 등)를 신청하는 연립·다세대주택은 소화기·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참고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경상남도	예방안전과(☎055-211-5415)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을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차량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을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여 화재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 전	신 규
▶ 7인승 이상의 차량	→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고 자동차 검사 시 설치여부 확인

※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검용’표시가 있는 소화기 형식승인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를 말하며 차량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설치수량과 위치가 달라 확인이 필요함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참고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및 비치 기준

화재 취약시설 안전용품 지원 사업

경상남도 예방안전과 ☎055-211-5413

화재안전취약자 주거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안전용품을 지원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화재안전취약자 주거시설에 자동소화패치 설치로 전기화재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방연물품을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사업기간) '25. 1월 ~ 12월
- (사업대상) 거동불편자 주거시설(15,000가구), 사회복지시설(408개소)
- (사업내용) 안전환경 조성 위한 자동소화패치 및 방연물품 지원
- (총사업비) 753,200천원(도비 376,600 / 시·군비 376,600)
- (추진일정)

사전준비	대상선정	제품구매	안전용품 보급
시·군 이·통장 교육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시·군 사업부서	시·군 사업부서	시·군 이·통장 소방서 현장방문
'24. 12월	'25. 1월 중	'25. 3월(限)	'25. 6월(예정)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 ▶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문화 가족 119안전체험의 날 운영

경상남도 예방안전과 ☎055-211-5483

다문화 가족을 위한 체험의 날을 매달 지정·운영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다문화 가족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과 체험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소통 증진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참여대상	어린이, 학생,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 계층 동시 체험	(맞춤식) 다문화 가족 전용 체험
예약방식	(분산) 개인별 체험 예약	(집중) 매월 셋째 주말 1일 지정
캠프운영	미운영	여름·겨울방학 1박2일 운영

※ 운영개요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다문화 가족 누구나
운영기간	2025년 1월~12월 / 안전캠프(8월, 12월)
운영장소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및 합천군 일원
프로그램	24개 전시 체험시설, 소방관 진로 체험, 문화탐방 등

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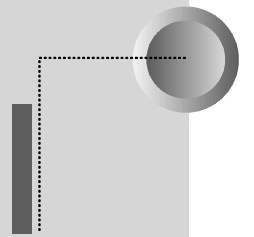
2025년 1월 1일

참고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기업/창업/청년



경남 동행론(긴급 생계대출) 출시

경상남도 | 경제기업과 ☎055-211-3314

1인 최대 150만원 한도, 7~9% 금리로 저신용자 대상 긴급 생계비를 대출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한계 도민의 기본적인 생계 해결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 금융 안전망 구축을 통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취약계층 지원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경남 동행론 개요 】

- ▶ (사업기간) '25년 ~ '27년
- ▶ (지원대상) 19세 이상, 신용등급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도민
- ▶ (지원방식) 서민금융 전문기관 특례보증 + 지역은행 대출실행
- ▶ (지원금액) 1인 최대 150만원(금리 7~9% 내외)
- ▶ (지원절차) ① 신청(서민금융 전문기관 방문·앱·전화)
② 보증승인(서민금융 전문기관), 대출(은행 방문·앱)
⇒ 긴급성 고려, 1회 방문 또는 방문 없이(앱 병행) 48시간 이내 대출

시행일

2025년 상반기

참고 | 「경상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경상남도 | 경제기업과 ☎055-211-332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자율적이고 선도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경상남도 납품대금 연동제 고충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상생협력
지향적 연동 약정 체결 지원 정책 마련

< 경상남도 납품대금연동제 고충상담 창구 운영 >

- 목 적 : 도내 위·수탁 중소기업 공정거래 지원으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
- 운영방향 : 중소기업 정보 철저보호를 통한 고충상담 및 제도개선 건의
- 운영방법 : 도 직접 운영(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파트, ☎ 055-211-3322~3325)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사업내용) 2025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5개사 지원
- (신청자격) 도내 중소기업 1개사 이상(수탁기업)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추진절차)

구분	연초부터 홍보 주력	요건검토	실적 제출	심의위원회	인센티브 지원
내용	공고 및 접수	약정서 등 서류 검토	연동제 운영 실적 제출	심의를 통한 우수기업 선정	홍보 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 등 비용 지원(소급)
시기	8~9월	9~10월			10월말

- (우수기업 지원)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지원(마케팅, 사업화 비용 등)

시행일

2025년 1월

참고 |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지원사업

경상남도 | 경제기업과 ☎055-211-3323

도내 창업 1세대 미승계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지역경제 손실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배경

- 고령화 CEO 증가, 후계자 부재 등에 따라 기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족승계, 기업승계(M&A) 등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정책지원)

▶컨설팅·교육
• 경남형 경영권 승계 자문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방식(전화, 이메일, 대면) 지원, 지역세무사 배치 등
• 경영권 승계자 역량강화 지원 교육 - 법무·세무·노무 분야 실무교육, 모범사례 분석·공유 등
• 기업승계 희망포럼 개최 - 중소기업 1·2세대 간 소통 등
▶정책 개발 및 인식 개선
• 경남형 경영권 승계 정책 개발 및 경남기업 우수사례 발굴 등

시행일

2025년 1월

참고 |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가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74
수행기관	경남여성가족재단☎055-713-7078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육아 지원 공간 마련,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동참을 유도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개 당 최대 한도 500만원(10개소 지원)

① 직원 휴게공간 개선 지원

- ▶ 냉난방기, 소파 및 테이블 등 설치 등의 휴게실 개선

② 육아 지원 공간 구축 지원

- ▶ 수유실, 임산부 직원들 전용 휴식 공간 개선

③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구축 지원

- ▶ 가족행사, 어린이날 체험 프로그램 등 직장 내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조성

④ 건강·위생공간 개선 지원

- ▶ 체력단련실, 화장실 개보수비용 지원

시행일

2025년 경상남도 가족친화인증 환경개선 사업 공고일부터

참고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5조

G-콘텐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경상남도 창업지원과 ☎055-211-2563

경남만의 특색을 가진 콘텐츠(G-콘텐츠)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에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추진배경

- 지역 첨단기술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문화 콘텐츠 분야 창업 육성을 지원하여 제조업 위주인 지역 창업생태계에 다양성을 추구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사업예산) 15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업력 7년 이하 콘텐츠 창업기업 10개사
 - *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이전이 가능한 도외 기업도 가능
 - (지원사항)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전담 운영
 - ▶ 콘텐츠 맞춤형 전문교육(IP, 경영, 기술개발 등) 및 멘토링
 - ▶ IR트레이닝(피칭스킬, Deck 제작 및 고도화, 모의 IR)
 - ▶ 직접/연계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한 네트워킹
 - (향후일정) 전담 운영사(창업기획자) 선정(1~2월)
 - 지원기업 모집(2~3월) → 심사 및 선정(4월)
 -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4월 말~)
- ※ 지원사항 및 일정은 전담 운영사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시행일 2025년 1월

참고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8조, 경상남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6조

경남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경상남도 | 창업지원과 ☎055-211-2563

도내 비도시권에 산재한 지역 특화 자원을 주제로 한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우수 인력 유입으로 창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비도시권, 특히 기술창업 수요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사업기간 : 2025 ~ 2026년
- 사업예산 : 2,0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 ※ '25년 예산 : 1,000백만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팀)(또는 예비창업자) 20~30개사(팀)
 - *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이전이 가능한 도외 기업도 가능
- 지원사항 : 전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전담 운영
 - ▶ 수요자 맞춤형 사업모델 구축 및 자원조사방법 교육
 - ▶ 엑셀러레이팅(교육, 멘토링, IR트레이닝 등) 제공
 - ▶ 사업화 지원
- 향후일정 : 전담 운영사(창업기획자) 선정(1~2월)
 - 지원기업 모집(3~4월) → 심사 및 선정(4월)
 -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실시(4월~) → 사업화 지원(5월~)
 - ※ 지원사항 및 일정은 전담 운영사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시행일 2025년 1월

참고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8조, 경상남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6조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새단장

경상남도 | 청년정책과 ☎055-211-3575

정책, 공간, 인물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담아 새단장하였습니다.

추진배경

- 청년정보플랫폼이 청년 정책 홍보 및 청년 참여·소통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 및 강화 필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공간, 인물 등 다양한 청년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

□ 좋아지는 점

- ① (청년공간 한곳에서 확인 가능) - 청년센터, 스터디룸, 공연무대 등
- ② (꿈 아카데미 신설) - 성공 청년 발굴, 홍보 및 확산 캠페인 추진
- ③ (청년프로필 활성화) - 경남에서 활동하는 청년 누구나 등록 및 홍보
- ④ (시·군 플랫폼 연계) - 도, 시·군 청년정책 정보 원스톱 제공
- ⑤ (알림톡 서비스 확대) - 관심정책, 질의답변처리현황 등 즉각 알림

시행일

2025년 3월

| 참고 | 관련 법령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연중 지원

경상남도 청년정책과 ☎055-211-3574

경남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를 연중 내내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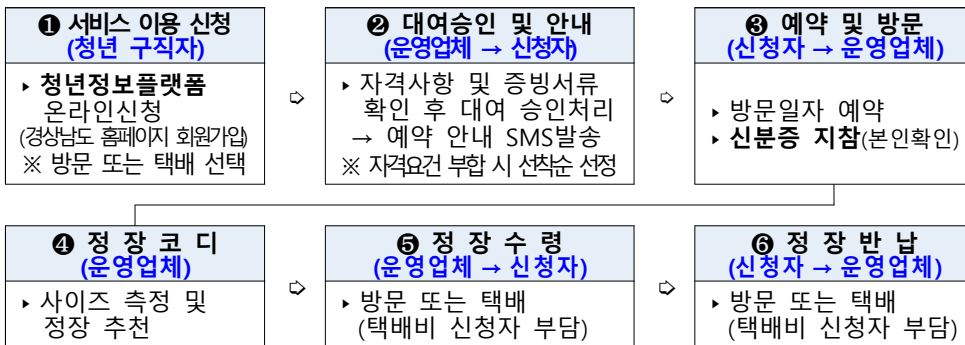
-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소요되는 구직 과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중 내내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 시행 필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매년 3월 정장 대여 시행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기간 발생	1년 내내 정장 대여 시행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기간 최소화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고교졸업예정자 포함)
- 대여품목 : 남·여 정장(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포함)
- 대여기간 : 3박4일(연5회/인)
- 대여 신청방법 : 경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시행일

2025년 1월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경상남도 청년정책과(☎055-211-3553)

2025년부터 연간 1,000명 지원, 비정규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 청년 근로자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연간 500명 지원 정규직 근로청년에 한함	연간 1,000명 지원 비정규직 근로청년 포함

※ 경남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도내 사업장 근로청년에게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480만원 적립하면 도·시군이 480만원 지원하여 960만원+이자(5%)를 지급하는 사업

월적립액 20만원(청년 20) 만기액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 이자

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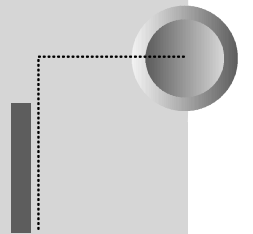
2025년 1월부터

참고 |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 사회복지/보건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23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80세 미만, 월 9만원	80세 미만, 월 10만원

-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월지급액 : 80세 미만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12만원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자활성공 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81)
경상남도	복지정책과(☎055-211-4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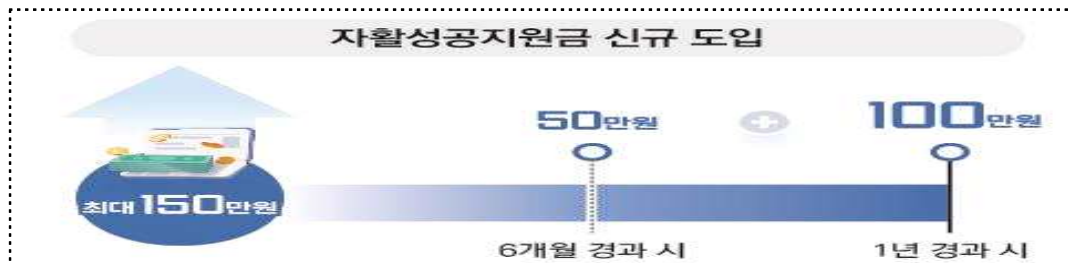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과 탈수급·자활촉진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자는 증가추세이나 자활 성공률(탈수급 및 민간 취·창업 비율)은 감소 추세
- 탈수급 촉진 및 수급 재진입 방지 위해 사례관리 강화 및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조건부 수급자
- (사업내용) 자활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하는 등 자립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 (지급액) 탈수급 후 민간취업 상태 6개월 지속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시 100만원 지급 → 1년간 최대 150만원 지급
- (전달체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관할 시군 직접 신청 → 요건 충족 확인 및 지급(시군)



시행일

2025년 하반기

참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8조의8

위기 도민 신속 지원을 위한 「희망지원금」 지원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 ☎055-211-4844

다양한 복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사회여건 변화로 수시로 발생하는 생계위기가구에 긴급·신속지원으로 전 도민 동행경남 실현

추진배경

- 위기상황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한계에 처한 도민에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등 지원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중위 소득 90%이하 가구
 - * 주소득원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방임, 유기, 가정폭력, 화재 등
- (지원내용) 생계(1인 730,500원, 4인 1,872,700원/월), 의료(1회 300만원 한도), 그 밖의 지원(주거, 교육, 시설이용,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1인 215만원, 4인 548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금액	2,152	3,539	4,522	5,487	6,397	7,258

- (재산) 대도시 2억 4천만원, 중소도시 1억 5천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 (금융) 가구규모별 생활준비금 + 1,000만원 이하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 「긴급복지지원법」, 「경상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5)
경상남도	복지정책과(☎055-211-4844)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추진배경

-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

주요내용

- 급여별 최대 지원액(4인가구 기준)

(단위 : 원)

2024년		→	2025년	
선정기준	지원액		선정기준	지원액
생계급여 (중위소득의32%)	183만3,572		생계급여 (중위소득의32%)	195만1,287
의료급여 (중위소득의40%)	229만1,965		의료급여 (중위소득의40%)	243만9,109
주거급여 (중위소득의48%)	275만358		주거급여 (중위소득의48%)	292만6,931
교육급여 (중위소득의50%)	286만4,957		교육급여 (중위소득의50%)	304만8,887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중위소득	'25년	239만2,013	393만2,658	502만5,353	609만7,773

※ '24년 대비 '25년 6.42% 인상(4인가구 기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확대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055-211-4864

문화소외 지역 어르신의 여가만족도 제고와 고독감 해소 등을 위해 무료 영화관람 등 지원 혜택을 모든 군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추진배경

- 어르신들의 문화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이웃과 교류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통해 행복한 노후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8개군(함양군, 거창군 제외) 1개군 당 연간 20회 운영	10개군(함양군, 거창군 포함) 1개군 당 연간 52회 운영

※ 군지역에 설치된 '작은영화관' 등에서 사업 운영 일정에 따라 무료로 영화 관람을 지원하고, 영화 상영 전에는 치매·심뇌혈관질환 등 예방 및 안전교육 등 시행함

영화관 현황	
01 익령도개비영화관	06 하동영화관
02 함안군작은영화관	07 산청군작은영화관
03 창녕군작은영화관	08 함양군('25년 3월 개관 예정)
04 CGV 고성	09 롯데시네마 거창
05 남해보물섬시네마	10 합천시네마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노인복지법」 제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전 시군 확대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055-211-4873

노인·장애인 등 돌봄 필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통합돌봄 제공으로
병원(시설)이 아닌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23년 6월 경남도 초고령사회 진입, 급속한 초고령화로 의료·돌봄 수요 폭발적 증가
- 생애말기 돌봄 희망장소 57.6% 집, 현실은 의료기관에서 사망 77.1% (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주요내용

- (사업위치) 전 시군
 - ('24) 9개 시군* → ('25) 전 시군 *통영,사천,김해,의령,함안,창녕,하동,산청,거창
- (사업대상) 노인·장애인 등 돌봄 필요 1인가구,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 (사업내용)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주거·보건의료·일상돌봄·서비스연계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시군특화사업) 지역 특성에 맞게 주거*, 보건의료**, 일상돌봄*** 등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 *주거환경개선·단기보호중간집, **방문의료·방문약료, ***외출동행·식사지원
 - (기본모형) ① 저장강박 및 화재위험 가정에 찾아가는 집정리 '클린버스'
② 복지버스가 모두 함께 찾아가는 올케어통합복지 '경남이 가겠섬 거기있섬'
- 신청 및 선정 : 읍면동 돌봄지원창구에서 신청 → 돌봄필요도 조사 → 사례회의 → 제공서비스 선정 등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 ※ 소득수준 및 돌봄필요도(우선 고려)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시행일

2025년 1월(기존 9개 시군), 2025년 3월 예정(신규 9개 시군)

참고 「경상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7조

경로당 무료급식 연계 '행복식탁 지원사업'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055-211-4883

입식식탁 및 의자 지원으로 좌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편의를 도모합니다.

추진배경

- 식사·가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입식식탁, 의자와 같이 식사에 필요한 기본적 설비 구축
- 오랜 좌식생활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대다수 노인들의 관절질환 및 근육피로 예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도모
- 행복식탁 다용도 활용으로 경로당 이용률 증가 및 문화공간 역할 확장에 기여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경로당 무료급식 연계 '행복식탁 지원' 사업]

- ▶ (사업기간) 2025년
- ▶ (지원대상) 입식식탁 미설치 경로당 4,258개소
- ▶ (지원내용)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편의도모를 위한 입식식탁(6인용 기준) 및 의자 등 지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노인복지법」 제4조,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장애인 연금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0)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132)

장애인연금 최대수령액이 월 42.4만원에서 43.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인연금 인상(2.05%)으로 소득지원 강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최대 월 42.4만원	최대 월 43.3만원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3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208만원

시행일

2025년 1월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기준 확대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055-211-493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제4차^{'21~'25}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치매환자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시행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①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면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
 - ②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③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 ④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신청
-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등

시행일

2025년 6월

참고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말기암 환자 가정방문 돌봄사업

경상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23)

생애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여 생애 말기 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돌봄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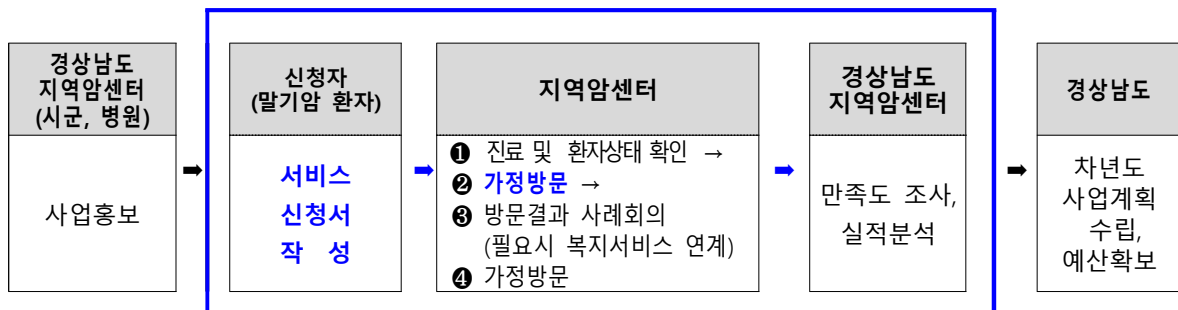
추진배경

- 고령인구 증가,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 관련 사회적 논의가 증가하나 도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부재로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 한계
- 생애 말기 지원 인프라 확대로 도내 호스피스 서비스 불균형 해소, 생애 말기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임종 보장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사업기간) 2025년 ~
- (지원대상) 말기암 환자
- (지원내용) 전문인력팀 월 2회 이상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 * 호스피스 돌봄 계획수립, 통증완화, 가족교육, 자원봉사자 연계 등
 - * 일부 본인부담금은 발생할 수 있음
- (수행기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지역암센터(수행인력 의사 1, 간호사 2, 사회복지사 1)
- (지원체계)



시행일

2025년 4월

참고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희귀질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055-211-4925

희귀질환자 가족의 상호지지를 위해 환아돌봄, 가족힐링캠프, 심리상담 서비스 등 자조모임을 확대 운영 합니다.

추진배경

- 희귀질환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족의 심리 회복과 상호지지를 위한 정책 필요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사업기간) 2025년 ~
- (지원대상) 희귀질환자 및 가족
- (세부내용)
 - ① 희귀질환별 자조모임 운영 확대 : '24년 3회 → '25년 4회(증1)
 - ② 환아 돌봄방 : 자조모임 시 별도 공간에서 환아돌봄 프로그램 운영
 - ③ 가족 힐링캠프 : 도내 휴양지에서 1박2일 휴식 제공(1회 시범운영)
 - ④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간편상담 후 고위험군은 마음투자사업 연계

※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수 없는 질환으로 80% 이상이 유전적이거나 선천성 질환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하며, 대부분 치료제가 고가이거나 발명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

시행일

2025년 4월

참고 | 「희귀질환관리법」 제3조, 제20조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8)
경상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34)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 수용 중심의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거주를 통한 자립과 회복지향으로 전환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지원대상) 19세 이상 지역 내 정신질환자
- (지원규모) 8세대(김해시, 양산시 각 4세대)
- (지원내용) 정신질환자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 (주거지원) LH소유 독립주거주택 및 자립준비주택
 - ※ 독립주거주택 : 임대보증금, 물품비 등 입소자 부담(최장 20년)
 - ※ 자립준비주택 : 임대보증금, 임대료, 초도물품비 지원(2~4년)
 - ⇒ (자립지원) 약물복용, 스트레스 등 건강 및 재정관리, 지역 내 재할·행정자원 연계, 대인·가족관계 관리 등

시행일 2024년 7월

참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6)
경상남도	보건행정과(☎055-211-4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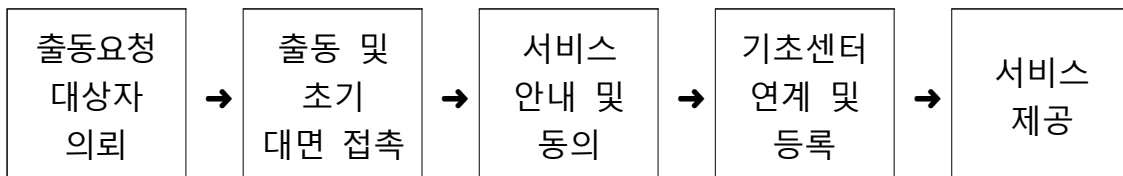
자살 사건 발생 시 초기 응급출동 및 위기 대응으로 자살 유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자원을 적기에 받도록 지원

추진배경

- 심리지원 및 사회·경제·환경적 문제를 해결하여 회복 도움,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안착 및 안정화 도모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지원대상) 도내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 (지원내용)
 - ⇒ (심리·정서) 애도상담, 자조모임, 심리부검 면담 등 지원
 - ⇒ (경제·환경)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 학자금, 일시주거, 특수청소 비용 등 지원 (1가구당 최대 5,600천원)
 - ⇒ (자원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 서비스 이외의 자원 연계
- (서비스 과정)



시행일 2025년 7월 이후(예정)

참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제12조의2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211-5064)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위해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합니다.

추진배경

- 의료기관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의료비 부담 및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초래로 효율적 병상 수급 관리체계 구축 필요

주요내용

- (기존) 본심의 → (변경) 사전심의 및 보건복지부 승인

종 전	개 선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야 함	- (추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야 함 - (신설) ① 종합병원 개설 또는 ②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시·도 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 시군 위임

시행일

2025년 6월(예정)

참고 「의료법」 제3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및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4)
경상남도	식품위생과(☎055-211-5034)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추진배경

-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판매가 불가능했던 규정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강화 필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 판매 불가	→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가능

【 주요 개정 내용 】

- 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설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를 통해 영업신고
- ② 영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 종류와 한도 규정
- ③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관련 규정 마련
 - (주요업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등에 대한 상담 등
 - (자격기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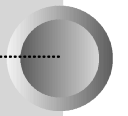
2025년 1월 3일

참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 여성/가족/보육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02-2100-6211)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23)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장려금 확대, 직업교육훈련 참여 촉진 수당을 신설하여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경력보유여성의 취·창업 지원 강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 새일여성인턴 지원금(1인 380만원) 1. 인턴채용지원금(기업 240만원) ⇒ 인턴기간(3개월) 월 80만원 2. 새일고용장려금(기업 80만원)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 근속장려금(인턴 60만원)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 직업교육훈련 - 훈련생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비부담금 운영(1인 10만원)	○ (확대)새일여성인턴 지원금(1인 460만원) 1. 인턴채용지원금(기업 240만원) ⇒ 기존 동일 2. 새일고용장려금(기업 160만원) ⇒ 인턴 종료 후 6,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3. 근속장려금(인턴 60만원) ⇒ 기존 동일 ○ 직업교육훈련 - 훈련생 자비부담금 폐지 - (신설) 훈련참여촉진 수당 지원 ※ 1회 10만원, 최대 4회 지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경력보유여성 면접 정장 대여 지원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23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면접 복장 지원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경력보유여성의 구직 과정에서 면접 복장 구입 관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면접 복장 착용으로 자신감 회복 및 취업 성공 기회 제공 필요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구직희망 경력보유여성
- (사업비) 10백만원(도비100%)
- (수행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사업내용)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
 - 대여품목 : 여성정장(셔츠,블라우스 등)
 - 대여기간 : 5일(5회/1인)
 - 대여방법 : 방문 또는 택배(신청자 부담)
 - 추진절차

1단계('25.1~)	2단계('25.2~)	3단계
• 면접 정장 대여 사업 추진 관련 운영업체 업무협약 추진 • 사업 홍보 및 서비스 이용 신청자 모집	• 경남새일센터 홈페이지 신청(신청자⇒경남새일)	• 대여승인 및 업체예약 안내 (경남새일⇒신청자) • 예약 및 방문(택배) (신청자⇒운영업체)

시행일

2025년 2월(예정)

참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유형 및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02-2100-6368)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4)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합니다.

추진배경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확대 필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시간당 이용요금) 11,630원	12,180원 (+ 550원)
(시간당 활동수당) 10,110원	10,590원 (+ 480원)
(영아0~2세 돌봄 시) 지원없음	돌보미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24년 지원율(요금 11,630원)						'25년 지원율(요금 12,180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가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나	75%~120%	60%	30%		나	75%~120%	60%	40%		
다	120%~150%	20%	15%		다	120%~150%	30%	20%		
라	150% 초과	-	-		라	150%~200%	15%	10%		
					마	200% 초과	-	-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 아이돌봄 지원법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4)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주요내용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종 전	개 정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기준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자녀 23만원/월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5만원/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10만원/월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5만원/월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9.3만원/인, 연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5만원/가구, 월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4)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청소년한부모 자녀 2세 이상 아동에게 아동양육비를 월 3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 상대적 빈곤 및 자녀양육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 지원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0~1세) 40만 원	좌 동
(2세 이상) 35만 원	(2세 이상) 37만 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방법
아동 양육비	월별	(0~1세)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계좌입금
검정고시 학습비	수시 (신청시)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
자립활동 촉진수당	월별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계좌입금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4)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을 위한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항목 개편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주요내용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구

지원항목	종 전	개 정
난방연료비	연 40만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제외)	연 40만원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 제외)
직업훈련비	연 50만원	폐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지원사업과 중복)
생활자립금	연 300만원	도내 거주 2년 이상 연 300만원 지원
건강관리비	연 10만원	연 20만원
방과후자녀학습비	중학생 자녀 연 48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연60만원
문화비	-	연 13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사업] * 난방연료비, 방과후자녀학습비 하반기 시행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구

지원구분	지원기준	지원대상(용도)	비고 (변경내용 시행시기)
생활자립금	세대당 연 3백만원이내 (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1월
난방연료비	세대당 연 40만원이내 (1~3월, 10~12월 지원)	상 · 하반기 난방비 ※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제외	7월
건강관리비	세대당 연 20만원이내	치료비, 진료비 등	1월
방과후자녀 학습비	1인당 연 60만원이내 (월 50천원이내)	학원, 방과후 등 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7월
문화비	세대당 연 13만원 이내	문화체험 기회 제공 ※ 문화바우처 지원 대상자 제외	1월

참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31)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5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주거 지원, 지지체계 구축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추진배경

- 홀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① 자산형성지원 (디딤씨앗통장)	월 10만원 한도 내 1:2 매칭 지원	→	대상아동 확대: 차상위계층 (차상위, 한부모), 연령기준 0~17세
② 자립수당	보호종료 5년 이내 월 50만원 지급		조기보호종료아동 지원확대
③ 자립정착금	12백만원지급		15백만원 지급
④ 대학생활 안정자금	2백만원 지급		변동없음
⑤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1차 병원 외래 1,000원, 23차 병원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입원급여비 총액의 10%, 약국이용 500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 아동복지법, 경상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 조례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055-211-4765)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이유식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이유기(생후 5 ~ 12개월) 영유아를 위한 친환경이유식 지원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해당지역)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밀양시 및 전 군부)
 - ※ '25년 인구감소지역 시범사업 운영 후 순차적 확대 예정
- (지원대상) 생후 5개월 ~ 12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
 - ※ 단, 생계급여수급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농림축산식품부)과 중복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친환경 농·축산물 이유식 꾸러미 지원
 - ⇒ 영유아 1인당 최대 60만원*(자부담 12만원 포함)
 - * 월 75,000원 x 8개월간(최대)
- (지원방식) 영유아 가정에서 주문한 친환경 농·축산물, 유기
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시행일

2025년 3~4월(예정)

| 참고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6)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분에게 난자·정자 동결·보존비 (남성 30만원, 여성 200만원 : 총 1회)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대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일부를 지원하여 아이 갖기를 원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지원대상) 의학적 사유에 따른 치료로 인한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
- (시행주체) 전 시군
 - ※ 추후 세부 지원범위 등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안내 예정

시행일 2025년 4월(예정)

참고 「모자보건법」

3~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75

부모부담 경비인 어린이집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3~5세 아동에게 지원하여 무상보육을 실현합니다.

추진배경

-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 추진에 따른 유치원 쏠림현상 예방 및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동등한 지원 보장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어린이집 이용 4~5세아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

- ▶ 필요경비 항목에 대한 부모동의서, 운영계획서, 실제 운영 사진 및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
-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반
- ▶ (지원금액) 평균 146천원(수납한도액 내 실제 부담한 금액만큼 지원)
- ▶ (지원항목)

(단위 : 천원)

구분	특별활동비	부모부담행사비	현장학습비	시도특성화비	차량운행비
국공립	월 60	연 100	분기당 40	월 30	월 30
민간, 가정				월 37	
기타	월 65			월 30	

- ▶ (지원제외) 입학준비금, 아침/저녁 급식비 제외

※ 경상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책정(매년 1월 말, 3월부터 적용)

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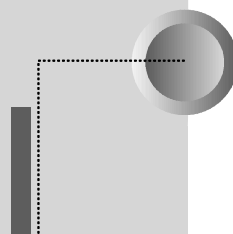
2025년 1월 1일

참고 |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경상남도 보육 조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 생활/주거/교통



경제 및 민생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03)
경상남도	세정과(☎055-211-3717)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신설·확대합니다.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고용부담 완화 및 일자리 확대 지원
-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
-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 뒷받침

주요내용

- 중소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 기준이
현행 월급여 총액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1억 8천만원 이하로 확대
-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3자녀 이상 100%, 2자녀 이상 50%)
- 소형주택*(아파트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도시형 생활주택
-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5% 감면 신설
- 사업시행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
하는 경우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5% 감면 신설 등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경상남도	세정과(☎055-211-3763)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답례품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확대를 통한 고액 기부 유도, 지방재정 확충 및 제도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광역시·기초)에 기부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기부시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 16.5% 추가 공제
- (답례품) 개인당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
- (상한액)

종 전	개 정
개인별 연간 기부금 500만원	개인별 연간 기부금 2,000만원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오프라인) 농협은행 창구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제3항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9)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84)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사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대상 임차료 및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사업

추진배경

-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하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2025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45호)

주요내용

- 주거급여 선정 기준 변경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종전	'24년	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개정	'25년	중위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 중위소득 인상(4인가구 기준) : ('24년) 5,729,913원 → ('25년) 6,097,773원 (6.42% ↑)

- 지원내용 변경

임차가구					자가가구				
가구수	지원상한액(만원/월)				구분	지원상한액(만원)		지원주기	지원내용
	3급지(창원)		4급지(그 외)			종전	개정		
	종전	개정	종전	개정					
1인	21.6	22.8	17.8	19.1	경보수	457	590	3년	도배, 장판 등
2인	24.0	25.4	20.1	21.5					
3인	28.7	30.2	23.9	25.6	중보수	849	1,095	5년	창호, 단열 등
4인	33.3	35.1	27.8	29.7					
5인	34.4	36.3	28.7	30.7	대보수	1,241	1,601	7년	지붕, 욕실 등
6인	40.6	42.8	34.0	36.3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 「주거급여법」 제5조,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64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시 발생한 대출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추진배경

-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도내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까지 사업대상 확대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사업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소득기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입가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5년 이내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지원내용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3% 이자지원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3% 이자지원

시행일

2025년 사업공고일로부터

참고 |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도·시·군 홈페이지 공고)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추진배경

-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 청년의 주거비 지원 강화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사업대상	19~34세 이하 청년	19~39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취업준비생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본인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억원 이하	취업준비생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사회초년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내용	대출잔액 4천만원 한도 3% 이차지원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3% 이차지원

시행일

2025년 사업공고일로부터

참고 |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공고(도·시·군 홈페이지 공고)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055-211-4434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사업기간) 2025년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의 1억원 이하의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개보수 수수료 지원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포함))
- (사업대상) 전 시·군
- (신청/접수) 시·군 부동산 담당부서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경남패스

경상남도

교통정책과(☎055-211-4135)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여 7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및 도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 취약계층 등 도민 교통복지 강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

주요내용

※ 정부 K-패스 기반 경남형 혜택 확대

구 분	종 전	개 정
지원을 확대	75세 이상 20% 지원 저소득층 53% 지원	75세 이상, 저소득층 100% 지원
지원조건 완화(어르신)	월 15회 이상 이용시 지원	75세 이상은 이용횟수 조건 없음
청년 연령 확대	19~34세 청년 30% 지원	19~39세 청년 30% 지원
월 지원상한 폐지	월 60회까지 지원	무제한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신설	-	2자녀 가구 성인 30% 지원 3자녀 가구 성인 50% 지원

【 경남패스 사업개요 】

- ①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
- ② 지원내용 : 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어르신(75세↑) 100%, 저소득층 100%, 청년(19~39세) 30%, 일반(40~74세) 20%
2자녀 가구 30%, 3자녀 가구 50% ※ 다자녀가구 : 18세 미만 자녀 최소 1명 이상
- ③ 적용 대중교통 :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

시행일

2025년 1월

참고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남패스란?

경남패스는 정부의 K-패스 기반으로 경상남도만의 혜택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도민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만 19세 이상 경상도민에게 대중교통비를 환급 해드리는 정책입니다.

경남패스 사업 주요내용

사업시행일

2025. 1. 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

지원조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 75세 이상은 이용횟수 조건없음

지원내용

75세 이상 어르신 **전액 환급**
저소득층 **전액 환급**
19 ~ 39세 청년 **30% 환급**
40 ~ 74세 일반 **20% 환급**
2자녀가구 성인 **30% 환급**
3자녀가구 성인 **50% 환급**
* 저 소득 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최소 1명 이상

지원방법

카드 사용 다음달 계좌입금(체크카드),
청구합인(신용카드), 충전(선불카드)

적용 대중교통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

경남패스 문의

☎ 055-120

경남패스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 평일 09:00 ~ 18:00 ☎



경남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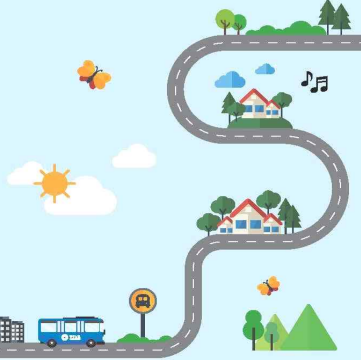
경상남도 GYEONGNAM

K패스 - 경남
경남패스

경상남도 GYEONGNAM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경남패스 안내

K-패스와 연계하여 경상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교통비 지원 정책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함안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남해군, 고성군, 남해군, 마천면,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안군

경남패스 이용방법

01 K-패스 카드 발급 또는 구입

후불교통카드 발급(은행방문/카드사신청)
또는 선불교통카드 구입(편의점/인터넷)

01 K-패스 후불교통카드 발급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은행계좌에 연결되는
체크/신용카드로, 후불교통 기능이 추가된 카드
- 매달 환급액이 자동으로 입금

카드발급 방법

은행방문	신한, 농협, 우리, 국민, 기업, 하나
카드사 홈페이지	신한, 농협, 우리, 국민, 삼성, 하나, BC, 현대
전화신청	080-864-8801 *영수 후 신청카드(1544-7000) 상담원과 통화 후 신청완료



카드발급 사이트

02 K-패스 선불교통카드 구입

-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교통카드로,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되지않는 경우 사용
- 환급액을 매달 앱에서 직접 받아서 충전액으로 사용

카드구입 방법

편 의 점	CU,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인 터 넷	네이버 캐시비샵

* 이출교통카드 중 (K-패스)적혀있는 카드 구입
편의점에 구매되어 있지 않은 경우, 편의점 직무원에게 발주신청하여 구입
카드 구입 후, "이출전소" 앱에서 카드등록 후 자동결제 진행

02 K-패스 앱 / 홈페이지 회원가입

★ 교통비 환급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K-패스 앱 또는
K-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회원가입 이후 사용한 내역부터 환급되며,
회원가입 전 사용한 내역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앱(안드로이드용) 앱(iOS용)

회원가입 절차



03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04 카드이용 다음달 환급

01 후불교통카드

카드사별 지급일정에 따라
카드 이용 다음달 계좌로 입금

카드사별 지급일정

7-10영업일 이내 지급	정해진 날짜에 지급
신한카드, 농협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타지역 영업일) 케이뱅크 (15일) BC카드, 기업, 현대 (내 결제일)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02 선불교통카드

"이출충전소" 앱의 쿠폰 메뉴에서 **충전바탕**을
눌러서 환급액 받기

환급액은 교통카드를 재사용하거나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20일부터 26일 사이 적립금 쿠폰을
받지 않으면 자동소멸됨

경남패스

경상남도 GYEONGNAM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AI 배차 시스템 도입

경상남도 | 교통정책과(☎055-211-4165)

AI 배차 시스템을 도입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 상담 과부하를 해소하여 도내 교통약자 이동여건을 보장합니다.

추진배경

-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이용 수요 증가로 인한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 과부하로 전화연결 애로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

주요내용

비 고	현 행	변 경
전화번호	☎1566-4488	☎1566-4488 : 현행과 동일 + ☎055-608-8000 : AI 배차
접수방식	전화 접수	전화접수 + AI 자동 배차
기 대 효 과	· AI 안내를 통한 배차로 상담 대기 시간 축소 - 시스템 사용에 거부감이 적은 젊은 계층(임산부 등) 적응 시 효율 극대화 · 이용 내역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 맞춤형 배차 가능 - 이용 내역 데이터를 활용한 선택지 제시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차 기대	

AI 배차 체계도



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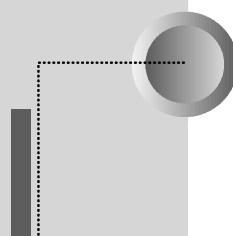
2025년 3월(예정)

참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 농림/축산/수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11-1739)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055-211-6252)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에 농지전용 없이 임시숙소로
이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설치, 연면적 33㎡ 이하) 설치 가능

추진배경

- 기존 농막에서 숙박행위 불가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한 새로운 형태의 체류시설 도입 필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농지 내 임시숙소 시설 설치 불가 (농지전용 필요)	체류형쉼터(33㎡ 이하)에서 임시숙소 가능 (농지전용 불필요)
기존농막(20㎡)에서 부속시설 설치 불가	→ 체류형쉼터(33㎡ 이하)에서 부속시설 가능 ※부속시설(테크, 처마, 주차장) 연면적 산정 제외

- ▶(내용) 주말·체험 영농인 및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연면적 33㎡ 이하)시에는 농지전용 불필요
- ▶(존치기간) 가설건축물로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부속시설) 데크(건축물가로길이×1.5m), 정화조, 처마(1m 이내), 주차장(1면)
- ▶(영농의무) 쉼터(연면적 33㎡ 이내)와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두배 이상 경작 의무

시행일

2025년 1월 2일

참고 「농지법」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5)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055-211-6314)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추진배경

-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

주요내용

<'24년 대비 '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변화(단위: 만원/ha)>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유기 6년차~)
논	벼·연근·미나리	70 → 95	50 → 75	35 → 57
	채소·특작·기타	130	110	65 → 78
밭	과수	140	120	70 → 84

- (지급면적) '24: 0.1~5.0ha/농가 → '25: 0.1~30ha/농가
- (지급단가) '24: 35~140만원/ha → '25: 57~140만원/ha
 - (논 단가 인상) 유기·무농약 단가+25만원/ha
 - (유기지속(유기 6년차~) 단가 인상) 품목별 유기단가의 50% → 60%
 - (유기전환(유기 전 3년) 단가 인상) 무농약 단가 → 유기 단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개 사육농장)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92)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4)

2027. 2. 7.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개 식용업계의 전·폐업이 의무화

추진배경

- '27. 2. 7. 부터 개식용업계 전·폐업 의무화로 기한 내 개 식용종식을 위한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을 2025년부터 시행

주요내용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개 사육농장)]

- ▶ (사업기간) 2025년 ~
- ▶ (사업대상)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현황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7.2.6일까지 폐업을 이행한 도내 개 사육농장주
- ▶ (사업내용) 도내 개 사육농장주의 전폐업 비용 지원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등 개 사육농장주의 전폐업 비용 일부 지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관련 맹견소유주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4.10.27.~'25.10.26.) 운영

추진배경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24. 10. 27일까지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주 부담, 지자체 추진 여건을 고려해 1년간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운영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맹견 사육허가제 의무기간 '24. 4. 27.~ '24. 10. 26.	맹견 사육허가제 의무기간 '24. 4. 27.~ '24. 10. 26.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단속유예) '24. 10. 27.~ '25. 10. 26.

※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책임보험가입, 입마개·목줄)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

시행일

2024년 10월 27일 ~ 2025년 10월 26일

참고 | 「동물보호법」 제18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27)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15)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확대되어 자부담률이 20%로 감소

추진배경

- 이상기후로 인한 가축 피해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 감소 및 경영안정 도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자부담 25% (도비 5% 지원)	자부담 20% (도비 10% 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중 보험 가입 농가
- ▶ 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20)
- ▶ 지원내용 : 가축 및 축산시설물의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등), 질병 또는 화재 피해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33

섬주민 중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여객선과 도선 운임 무료화 지원

추진배경

- 저출생 고령화 등 섬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섬 공동화 방지와 저소득층, 어르신 등 섬 주민 교통약자 교통복지 증진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섬주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 1,000원 초과분 지원	섬주민 중 저소득층, 75세 이상 어르신 은 여객선 및 도선 운임 무료화 지원 (기타 섬주민은 종전과 같음)

- 지원내용 : 기존 지원(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_{군특},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_{자체}) 후 여객선 및 도선 운임 1,000원 이하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운임 1,000원 이하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섬주민(6개 시군 2,191명)
 -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 총사업비 : 연125백만원(운임지원 105, 시스템 운영 20도비_{100%})
- 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시행일

2025년 3월(예정)

참고 |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지원조례 제4조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지침 개정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044-200-5607)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85)

유령어업 해소 효과가 크고,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어구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바닷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 보급 지원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지원대상]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지원대상]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로서, <u>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 자망 및 붕장어 통발 생분해 어구</u> 를 구입하는 자

【 생분해성 어구보급 】

- ▶ (지원대상) 생분해성어구* 사용을 희망하는 연근해통발·자망 어업인
* 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 자망 및 붕장어 통발 생분해 어구
- ▶ (지원내용) 기존어구와 생분해성어구 차액+기존어구 가격의 40% 지원
- ▶ (지원기준) 국비(기금) 70%, 도비 15%, 시군비 15%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양식업 면허 심사 · 평가제 시행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3)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3)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실시합니다.

추진배경

- 어장환경 개선 및 체계적 관리로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 선순환 체계 확보 및 공공자산인 공유수면 일시적 이용권 부여에 따른 어장 관리 의무와 책임성 인식 제고

주요내용

항목별	종 전	개 정
심사·평가 항목	-	→ ①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정도 ② 유희 양식장 및 불법임대 여부 ③ 양식업권자의 수산법령 위반여부 및 위반횟수 ④ 어장휴식 및 어장청소 실시여부
어장청소	어장관리법 적용 - 양식방법별 3~5년 주기 청소	→ 변경없음
어장 환경평가	어장관리법 적용(유효기간 만료 1년 전) - (대상) 어류가두리양식장 - (조치) 등급별 유효기간 연장기간 제한 및 환경개선 조치	→ 어장관리법 적용(유효기간 만료 1년 전) - (대상) 전 품종 - (조치) 등급별 유효기간 연장기간 제한 및 환경개선 조치
재개발 절차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적용(양식산업발전법) - (대상) 어업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된 어장 - (절차)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반영 → 재개발	→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적용(양식산업발전법) - (대상) 어업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된 어장 - (절차)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면허 심사·평가 시행 → 결과에 따라 어장환경 개선조치 →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반영 → 재개발

시행일

2025년 8월 28일

2025년 수산양식분야 신규 공모사업 시행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6)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4~5)

첨단 친환경 스마트양식 실현을 위한 2025년 수산양식분야 신규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

추진배경

- 어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스마트·자동화 시스템 도입 필요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2025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 공모계획 : '25년 상반기 중 해양수산부 사업공고

① 스마트가두리 시범사업

- ▶ (사업내용) 첨단 설비를 적용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 조성
 - 지원내용 : CCTV 모니터링, 스마트 제어, ICT 기반 자동먹이공급장치, 재해대응시스템 등
- ▶ (지원조건) 개소당 40억원(국비 30%, 도비 9% 지방비 21%, 자부담 40%)

② 패류 공동생산 시설사업

- ▶ (사업내용) 패류(가리비, 굴 등) 양식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구축(개소당 5어가 사용)
 - 지원내용 : 자동선별기, 세척기, 통합 제어장비 등 자원화 시스템
- ▶ (지원조건) 개소당 5억원(국비 50%, 도비 9% 지방비 21%, 자부담 20%)

시행일

2025년 상반기 중

참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3조, 제24조, 제25조

수산정책보험(어선원, 어업인) 지원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8)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93)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전(全) 톤수 어선으로 확대되고,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 연령이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 어선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어선원 보호 및 선주의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3톤 이상 당연가입 대상
- 소규모 어선에서 어업활동하는 어선원 보호 강화를 위해 당연가입 대상을 전(全) 톤수 어선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②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

- 어촌의 노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어업작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 연령 확대(만87세→만90세)

주요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 3톤 이상 어선	[당연가입 대상] <u>전(全) 톤수 어선</u>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대상] 도내 주소를 둔 만15세~87세	[가입연령] 도내 주소를 둔 <u>만15세~90세</u>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3)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74)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추진배경

-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추락한 사람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어선 승선 인원 2명 이하의 경우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주요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구명조끼 등의 착용요건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의 착용)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함

시행일

2025년 10월 19일

참고 |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3조

귀어 사랑방 운영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055-211-3273

귀어·귀촌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유희 숙박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귀어희망인이 귀어 준비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거처 확보 및 지원을 통해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 필요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사업량) 5명
- (시행주체) 시·군(거제시, 고성군)
- (지원대상) 경남도 귀어·귀촌 희망인
- (지원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희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 추진 방안 】

사업계획 수립	마을 수요조사	입주자 연계	입주 및 어촌생활	귀어귀촌 정착
· 예산확보, 운영 체계 및 계획 수립	· 참여마을 수요 조사 추진	· 참여 마을과 입주 희망자 연계	· 귀어 사랑방 입주 및 어촌·어업체험	· 거주지 확보 및 귀어귀촌 창업
'24. 8 ~ 11.	'24. 8.	'24. 12 ~ '25. 12.	'25. 1. ~ 12.	'26. 1.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제5조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지원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055-211-3274

50세 미만 귀어청년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위해 영어·가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귀어청년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어 정착 초기 단계에 재정적 지원 필요
- 법과 조례상 청년 어업인의 기준 연령 차이로 발생하는 사각지대 귀어청년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청년어업인 기준 연령 근거(사각지대)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0세 미만**
- ▶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50세 미만**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사업량) 11명
- (시행주체) 시·군(거제시, 고성군, 합천군)
- (지원대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귀어청년
 - * 40대미만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국비보조)으로 기 지원중
- (지원내용)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귀어청년(예정자 포함)의 영어·가게 자금 지원(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제5조

어촌 도화지마을 조성 사업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055-211-3273

머물고 싶은 어촌마을로 만들기 위해 미술학도 등과 연계하여 마을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청년 등 관계인구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어촌마을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자원을 아름답게 관리·보전하여 관광지로써의 확대 방향 모색
-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환경개선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청년 등 관계 인구 증대 도모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사업량) 1개소
- (시행주체) 경상남도(경상남도 어촌특화지원센터)
- (지원대상) 경남도 내 어촌마을
- (지원내용) 전국 미술전공이 있는 대학교, 예술고등학교에 참여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 후 사업을 원하는 마을과 연계, 마을 가꾸기 실시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4조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65)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조건 및 단가기준이 변경됩니다.

추진배경

- 수산자원 보호·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지원 대상	넙치, 가자미, 볼락, 돔 4종	전체 해수면 어종
지원 조건	전주기 배합사료 사용 어가	전주기 / 생사료 혼용 어가
단가 기준	전주기 일반(10,360원) / 곤충분(15,870원)	전주기* 일반(10,360원) / 곤충분(11,396원) 혼용 일반(3,626원) / 곤충분(3,989원)

* 전주기 배합사료 사용률 80%이상 어류 : 일반분(3,626원) / 곤충분(3,989원)

- ▶ 지원대상 : 양식 전주기(치어기~출하기) 배합사료를 사용하거나,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해상가두리 양식장
- ▶ 지원방법 : 배합사료 사용량(1포/20kg) × 지급단가 매월 지급
- ▶ 지원한도 : 어가(경영체) 당 최대 2.3억원
- ▶ 신청방법 : 양식장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참고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개정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65)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 등이 변경됩니다.

추진배경

-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어업의 확산과 해양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제고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지원단가	인증별·품목별 지급단가 × 인증 수면적(ha)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경영비용 증가분
지원한도	수면적 60ha ※ 53만원 ~ 2억7천3백만원/ha	→ · 어류 : 6500만원 · 해조류 등 : 3000만원

- ▶ 지원대상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 ▶ 지원내용 : 친환경생산 실천 등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생산비 증가액 일부 지원
- ▶ 지원방법 :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직불금 일시 지급(매년 11월)
- ▶ 신청방법 : 양식장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

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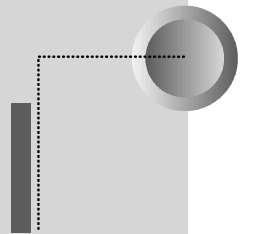
2025년 1월 1일

참고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 문화/체육/환경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9)
경상남도	문화예술과(☎055-211-4525)

2025년부터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추진배경

- 도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공연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를 완화시켜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도서/음악/영화/공연), 국내여행, 체육활동(스포츠)을 지원하는 카드
 - (사 용 처)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
 -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누리집(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앱 접속
- ※ 다음해에도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없이 지원금 자동충전

구분	2024년	→	2025년
문화누리카드 지원액	1인당 연 13만원		1인당 연 14만원

시행일

2025년 1월

참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 지원

경상남도 문화산업과 ☎055-211-4284

도내 작은영화관 이용 활성화 및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작은영화관 수익의 적자 발생에 따른 영화관람료 지원을 통한 관람객 유인 효과 및 운영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 (사업기간) 2025. 1. ~ 12.
- (지원대상) 도내 작은영화관 이용객
- (지원규모) 도내 작은영화관 8개소 관람료 할인(1매당 3,000원)
- (사업내용)
 - 1인 2D기준 영화관람료 3,000원 지원(관람료 ^{기준}7,000원→^{할인}4,000원)
 - 작은영화관 좌석수 및 일일 평균 상영횟수 고려, 차등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할인 운영
- (지원방법)
 - 현장 신분증 확인으로 경상남도 도민이면 누구나 할인 가능
 - 타 시도 관람객의 경우, 도내 숙박영수증 지참 시 할인 가능
- (총사업비) 100백만원 (좌석수 등을 고려 작은영화관 별 차등지급)

시행일

2025년 3 월

참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5)
경상남도	체육지원과(☎055-211-4724)

2025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이 10만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추진배경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평등한 스포츠 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 피해가구 유·청소년(5세~18세)에게 매월 10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연중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사 용 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 (문 의) 거주지 시군 주민센터

구분	2024년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	1인당 연 10만원	1인당 연 10만5천원

시행일

2025년 1월

참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제1항제11호

조례 대상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6)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6623)

2025. 2.21.부터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복될 경우,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추진배경

- 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조례대상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대상 중복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 조례대상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대상 중복 시, 조례대상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단,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일 경우는 제외)

※ (참고)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생략 가능

시행일

2025년 2월 21일

참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제44조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추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2)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6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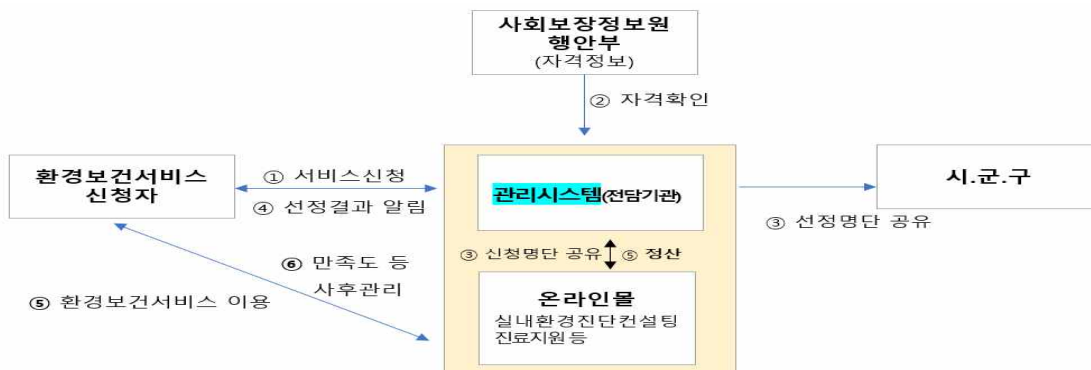
환경보건 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추진배경

- 당초 환경보건 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중이었으나, 다양한 서비스 수요 증대로 폭넓은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사업대상자를 지자체가 추천	환경보건취약계층 서비스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장판, 벽지 교체)	아래 환경보건서비스 중 선택 ○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 곰팡이 등 환경유해인자 제거 서비스 ○ 생활용품 유해인자 관리 서비스 ○ 건강나누리캠프 (환경성질환 예방 체험 교육)
사후·현금(현물) 지급	사전 전자이용권(바우처) 지급



시행일

2025년 3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 본격 시행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78)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6705)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요건(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결격 사유 등) 재검토를 통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및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폐기물처리업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할 때마다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도록 함

*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충족, 결격사유 미해당,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책임 이행 등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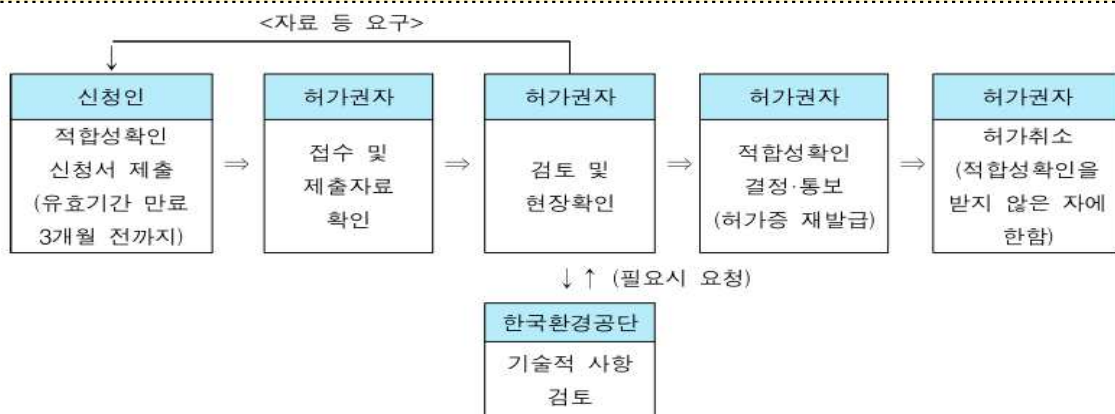
① 대상

-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② 제재사항

- 적합성 확인을 하지 않은 처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에 따라 기 허가업체(~'20.5.26.)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전까지('24.11.27.~'25.2.27.)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③ 추진절차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참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5의3

참 고

적합성확인 최초 유효기간 적용례

최초 허가일자		최초 유효기간(개정안 적용안)	
연도	월일	기산일(부터)	만료일(까지)
2008년 이전	1/1 ~ 3/31	2020-07-01	2025-06-30
	4/1 ~ 6/30	2020-07-01	2025-06-30
	7/1 ~ 9/30	2020-10-01	2025-09-30
	10/1 ~ 12/31	2021-01-01	2025-12-31
2009년~2013년	1/1 ~ 3/31	2021-04-01	2026-03-31
	4/1 ~ 6/30	2021-07-01	2026-06-30
	7/1 ~ 9/30	2021-10-01	2026-09-30
	10/1 ~ 12/31	2022-01-01	2026-12-31
2014년~2018년	1/1 ~ 3/31	2022-04-01	2027-03-31
	4/1 ~ 6/30	2022-07-01	2027-06-30
	7/1 ~ 9/30	2022-10-01	2027-09-30
	10/1 ~ 12/31	2023-01-01	2027-12-31
2019년~2022년	1/1 ~ 3/31	2023-04-01	2028-03-31
	4/1 ~ 6/30	2023-07-01	2028-06-30
	7/1 ~ 9/30	2023-10-01	2028-09-30
	10/1 ~ 12/31	2024-01-01	2028-12-31
2023년	1/1 ~ 3/31	2024-04-01	2029-03-31
	4/1 ~ 6/30	2024-07-01	2029-06-30
	7/1 ~ 9/30	2024-10-01	2029-09-30
	10/1 ~ 12/31	2025-01-01	2029-12-31
2024년 이후	1/1 ~ 3/31	2024-04-01	2029-03-31
	4/1 ~ 6/30	2024-07-01	2029-06-30
	7/1 ~ 9/30	2024-10-01	2029-09-30
	10/1 ~ 12/31	2025-01-01	2029-12-31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제도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0)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6704)

2024.12.28.부터 다른 지자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면 반입협력금을 부담하게 합니다.

추진배경

- 「폐기물관리법」 개정('22.12.27.)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
-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적정 처리 방법 연구 등에 사용

주요내용 '25년 신규사업

① 부과·징수자

-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② 징수대상

-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은 제외)
- * 공공시설 반입폐기물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24.12.28.) 민간폐기물처리업자 반입폐기물은 단계적 시행 (일반)'28.1.1./음식물류'30.1.1.(부칙)

③ 산정범위

- 환경부가 고시한 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종류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반입협력금을 조례로 정함

④ 사용용도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용도* 외 5개 사업을 사용용도로 규정
 - ①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홍보·교육
 - ③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④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 ⑤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 * 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③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시행일

2024년 12월 28일

참고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 제5조의 3